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11월 0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5.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가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때 주차요금의 50% 감면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제1호라목)
-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가 보훈보상대상자증서를 소지한 때 주차요금의 50% 감면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의2제1호마목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

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
마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

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 또는 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	제4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: 50 퍼센트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) 가. ~ 다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신 설>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6항에 따른

<u><신 설></u> 2. ~ 9. (생 략)	<u>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.1</u> <u>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</u> <u>자</u> <u>마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</u> <u>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</u> <u>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</u> <u>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</u> <u>서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</u> <u>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</u> <u>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</u> <u>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</u> <u>서를 소지한 자</u> 2. ~ 9. (현행과 같음)
--	--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「주차장법」 ○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○ 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[주차장법]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[제8조제1항](#)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[도로교통법](#)」 [제2조](#)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6.8.>

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~ ⑤ (내용생략)

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[제13조](#)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22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-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

2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생략

3. 미첨부 사유

- 5.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에 따른 부분적인 수입의 감소는 있을 수 있으나, 감면대상자의 범위가 경미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함.

4. 작성자

건설교통위원회 손 철 윤 의원